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77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7월 17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공고기간: 2024. 07. 17. ~ 2024. 07. 30.
-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장수현	1963.○.09.	0178200274100004487	₩2,389,500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 강변로 ○○
2	서연호	1981.○.20.	0178200274100004455	₩2,361,170	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20번길 ○○
3	장종현	1980.○.19.	0178200274100004580	₩3,540,000	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○○
4	김종열	1961.○.06.	0178200274100004449	₩4,725,900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○○
5	정충명	1987.○.31.	0178200274100000295	₩6,637,500	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○○
6	이권희	1984.○.14.	0178200274100004467	₩6,637,500	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73번길 ○○
7	오중호	1971.○.05.	0178200274100004482	₩6,867,6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○○
8	이은아	1979.○.20.	0178200274100003515	₩8,319,000	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○○
9	박태훈	1976.○.20.	0178220274100003938	₩8,600,000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○○
10	이정수	1981.○.15.	0178200274100003506	₩9,558,000	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○○
11	이준일	1966.○.28.	0178200274100000257	₩9,558,000	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5길 ○○
12	유숙자	1949.○.12.	0178200274100004731	₩12,600,000	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03번길 ○○
13	정민섭	1974.○.26.	0178200274100000309	₩12,600,000	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40번가길 ○○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4	조종애	1959.○.21.	0178200274100003269	₩13,275,000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○○
15	태상애	1957.○.18.	0178220274100001477	₩17,700,000	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○○
16	최제욱	1981.○.01.	0178200274100004702	₩18,000,000	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○○
17	노민영	1979.○.12.	0178220274100003923	₩30,000,000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○○
18	정동인	1982.○.31.	0178220274100003922	₩30,800,0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50번길 ○○
19	김태진	1971.○.11.	0178200274100003565	₩31,860,000	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56번길 ○○
20	여동희	1971.○.27.	0178200274100003572	₩31,860,000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나길 ○○
21	이대실	1967.○.11.	0178200274100000451	₩31,860,000	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○○
22	안병준	1972.○.22.	0178200274100004730	₩47,790,000	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41번길 ○○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